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30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김미애 · 이종배 · 우재준

조정훈 · 이만희 · 유용원

박성민 · 곽규택 · 이인선

추경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주거·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그런데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라 인구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특구 내 기업, 대학 및 연구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을 통하여 입주하는 기업·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심융합특구를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총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집적시설 등이 3개 이상 인접하여 집적 가능성이 높을 것
3. 광역교통망 접근성 및 정주 인프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업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기술기업, 연구기관, 창업기업 유치 공간 조성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기반시설비

2. 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 및 거점공간 설치비

3.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에 입주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내 자율혁신형 대학(학과 및 단과대학 자율 개편, 기술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글로벌 협력 기반 연구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동단과대학(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신산업 기술 중심의 학제간 융합 교육을 위해 설치하는 단위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예산·부지·인력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율혁신형 대학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학과 설치·폐지, 정원 조정, 교과과정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③ 공동단과대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내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개방형 실험실, 캠퍼스형 창업 보육센터, 산학연 클러스터
 2. 민간기업과 연계된 기술이전 플랫폼 및 고급연구장비 공동활용센터
 3. 외국인 연구자 및 교수 채용 지원 인프라
- ⑤ 제4항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2(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심융합특구를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u> <u>1. 총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u> <u>2. 대학, 연구기관, 기업집적시설 등이 3개 이상 인접하여 집적 가능성이 높을 것</u> <u>3. 광역교통망 접근성 및 정주 인프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업체를 구성할 수 있다.</u> <u>③ 국가는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u>

<신 설>

할 수 있다.

1. 첨단기술기업, 연구기관, 창업기업 유치 공간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기반시설비

2. 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 및 거점공간 설치비

3.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에 입주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31조의2(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내 자율혁신형 대학(학과 및 단과대학 자율 개편, 기술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글로벌 협력 기반 연구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동단과대학(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신산업
기술 중심의 학제간 융합 교육
을 위해 설치하는 단위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운
영을 위하여 예산·부지·인력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율혁신형 대학은 「고등
교육법」에도 불구하고 학과
설치·폐지, 정원 조정, 교과과
정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③ 공동단과대학은 「국가연구
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
기관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
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
심융합특구 내 자율혁신형 대
학 및 공동단과대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프라 구축 사
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개방형 실험실, 캠퍼스형 창
업 보육센터, 산학연 클러스
터

2. 민간기업과 연계된 기술이전
플랫폼 및 고급연구장비 공동
활용센터

	<u>3. 외국인 연구자 및 교수 채용 지원 인프라</u> <u>⑤ 제4항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u>
--	---